= 2026년 제32회 법무사시험 형사소송법 총평 =

예기치 않은 타격을 맞았음에도 끝까지 버틴 여러분의 수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각설하고, 올해 형사소송법 문제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문 1】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에 있어서 변호인의 참여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변호인에게 별도로 그 집행의 일시·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위법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대판 2025.4.24. 2024도19106, 대판 2020.11.26. 2020도10729, 불의타인 【문 2】는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바, 포괄일죄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의 판단시점에 관한 대판 2026.1.15. 2025도14142, 【문 3】은 사법경찰관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3항의 법리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 사이에서도 공범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대판(全合) 2004.7.15. 2003도7185와 대판 2020.6.11. 2016도9367가 출제되었습니다.

【문 1】은 2순환 모의고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 숙지된 문제였지만, 배점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위수증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안의 포섭이 중요하다고 보이며, 불의타인 【문 2】는 공소시효가 작년에도 출제되었었고, 해서 저의 멍청한 판단으로 올해 무사시험에는 좀 출제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최근판례임에도 소개하고 정리해 주지 못한 점은 더 이상 할 말이 …, 그리고 【문 3】은 6년 전 여러분 시험에 이미 출제되었던 문제로, 제312조 제3항의 공범의 법리는 기초적으로 3순환 모의고사를 통하여 훈련하였기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접근하였다는 후문입니다.

불의타, 예기치 않은 타격, 공소시효, 강사시효, 꽈락 등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머리가 편치 않겠지만,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떵뱃짱 마음으로 추스르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 번 그 동안의 여러분의 수고에 존경하는 마음을 보내며, 내일을 계획하며 잠시나마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며, 합격을 기원하는 김영환이 올립니다.

2026년 제32회 법무사 형사소송법 해설

【문 1】

피해자는 2023. 12. 27. 피고인을 스토킹범죄로 고소하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감금 피해에 대하여 제1회 경찰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2023. 12. 31. 피고인을 위와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피해자는 2024. 1. 1. 제2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나체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남자친구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실제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지 알지는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은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첫 피해자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과 사진을 볼 테니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탐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 등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당일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 탐색은 동의하에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자필 기재하였고, 경찰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변호사 A와 통화를 하여 긴급체포가 되어 조사 중임을 알렸고, 변호사 A는 2024. 1. 2. 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수사기관은 2024. 1. 3.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고, 2024. 1. 4. 이 사건 영장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탐색하여 저장된 이 사건 영상을 찾아 압수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탐색·복제 과정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피고인의 변호인 A에게 위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변호인 A는 위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영장의 집행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한 바 없고, 변호인 A도 경찰에 이 사건 영장의 집행 상황을 문의하거나 그 과정에의 참여를 요구한 바는 없다. 피고인은 2024. 3.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영상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다.

법원이 이 사건 영상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이유에 관하여 논하시오. (15점)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다수의견에 따름)

【문 2】

피고인은 2024. 4. 11. 범죄단체인 X파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다.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과 A, B, C, D는 폭력조직 X파의 구성원이다.

A, B, C는 2023. 3. 21. 시간불상의 밤에 전주시 ＊＊주점 안에서 모여 "X파 파이팅!"을 외치고, A는 ＊＊주점 안에서 타 범죄단체인 Y파 조직원과의 싸움이 끝난 직후 D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이에 D는 해당 싸움에 대한 대책을 하달하기 위해 조직원들을 모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및 B, C는 2023. 3. 22. 00:40경 전주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추가 발생할 Y파와의 충돌에 대비하며 대기하는 한편 속칭 '전쟁'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을 논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X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검사는 2025. 6. 20. 위 공소사실에 '가입'이라는 자구를 추가하고, 피고인의 X파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5. 8. 11.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다. 변경된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변경된 부분 밑줄 강조).

1) 범죄단체인 'X파' 가입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사이에 전주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X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X파 조직선배인 D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X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피고인과 A, B, C, D는 폭력조직 X파의 구성원이다.

A, B, C는 2023. 3. 21. 시간불상의 밤에 전주시 ＊＊주점 안에서 모여 "X파 파이팅!"을 외치고, A는 ＊＊주점 안에서 타 범죄단체인 Y파 조직원과의 싸움이 끝난 직후 D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이에 D는 해당 싸움에 대한 대책을 하달하기 위해 조직원들을 모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및 B, C는 2023. 3. 22. 00:40경 전주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추가 발생할 Y파와의 충돌에 대비하며 대기하는 한편 속칭 '전쟁'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을 논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X파 구성원으로 가입·활동하였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X파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의 주장 당부와 그 이유에 관하여 논하시오. (15점)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다수의견에 따름)

【문 3】

피고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A가 2021. 8. 17.부터 2023. 3. 30.까지 총 43회에 걸쳐 합계 23,490,000원을 환자 소개의 대가 등 명목으로 교부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소개·알선·유인 행위'라 한다)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벌규정인 의료법 제91조를 적용법조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 A는 이 사건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 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인 2023. 10. 20. 사망하였다.

법원이 위 사법경찰관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이유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다수의견에 따름) ※ 관련 법령은 【별첨】 참고

【별첨】

▣ 의료법(일부발췌)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33조제4항, 제34조의8제2항 전단, 제34조의9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2. 제23조의5를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한 자
4.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제9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년 제33회 법무사 형사소송법 해설(261030)

【문 1】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시 변호인의 참여권의 법적 성격[1] (15점)

Ⅰ. 문제점

법원이 이 사건 영상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에 있어서 변호인의 참여권의 법적 성격,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Ⅱ. 압수수색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의 법적 성격

판례는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을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으로 보아, 설령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의 영장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제219조, 제1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판 2020.11.26. 2020도10729 등).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308조의2)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판(全合) 2007.11.15. 2007도3061 등).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인정

판례는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판(全合) 2007.11.15. 2007도3061 등).

Ⅳ. 문제의 해결

변호인의 참여권을 고유권으로 보는 판례에 따르면, 변호인 A에게 별도로 그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

1) 변시 2025(3) 유사, 법무사 2013 유사, 사시 2007. ☞ 상세는 사례연습 52(변사기 151-152p) 참조.

그러나 사안은, ① 2024. 1. 1. 이루어진 휴대전화 탐색은 피고인의 동의에 따른 것이고 그 과정에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었다는 점, ② 수사기관은 이 사건 영상이 발견되자 더 이상의 수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압수하였다는 점, ③ 이 사건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한 바도 없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수사기관에 이 사건 영장의 집행 상황을 문의하거나 그 과정에의 참여를 요구한 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변호인에 대한 참여 통지 누락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판 2025.4.24. 2024도19106).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영상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문 2】 포괄일죄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의 판단시점 (15점)

Ⅰ. 문제점

검사가 피고인을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한 후 '가입' 행위를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먼저 ① 범죄단체 '활동'과 '가입'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②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면 공소장변경시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판단시점이 문제된다.

Ⅱ. 범죄단체의 '가입'과 '활동'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행위에 대한 예비·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런데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26.1.15. 2025도14142).

Ⅲ.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시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판단시점

포괄일죄에서는 그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대판 2022.10.27. 2022도8806).

이러한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대판 2026.1.15. 2025도14142).

Ⅳ. 문제의 해결

피고인은 2024. 4. 11. 범죄단체인 X파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후 검사는 2025. 6. 20. 위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X파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법원이 2025. 8. 11.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은 "2015. 5.경부터 2015. 6.경 사이"이다(공소시효의 기산점. 제252조 제1항).

한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0년이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인 2015. 5.경 내지 6.경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4. 4. 11. 공소제기가 있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공소사실 중 X파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문 3】 공범에 관한 제312조 제3항의 법리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 사이의 적용[1] (20점)

Ⅰ. 문제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법리와 행위자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법인 또는 개인 사이에서도 제312조 제3항의 공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및 제314조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된다.

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법리

제312조 제3항은 그 취지(인권보장, 위법수사 억지)상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뿐만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경우에도 (확장) **적용**된다(대판(全合) 2004.7.15. 2003도7185[전원일치] 등 참조).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사경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고(소위 피고인내용인정설), **그 당연한 결과로** 원진술자의 출석·진술불능이라는 필요성과 특신상태 하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제314조도 적용되지 않는다**(위 全合).

한편, **'내용을 인정할 때'**란 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행위자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 사이에 제312조 제3항 적용 여부

제312조 제3항의 법리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등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도 포함되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이러한 법인 또는 개인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20.6.11. 2016도9367[양벌규정 사건]).

생각건대, **행위자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이 있고, 따라서 공범관계 등과 마찬가지로 **인권보장적인 요청에 따라** 제312조 제3항이 이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위 판례 참조).

Ⅲ. 문제의 해결

판례에 따르면, 행위자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 사이에서도 제312조 제3항의 공범에 관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사법경찰관 작성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증거부동의하고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당연한 결과로** A가 사망하였더라도 제314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1) 법무사 2020 유사. ☞ 상세는 사례연습 128(변사기 404-405p) 참조.